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7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나2018737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redacted]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가합5286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20.
판 결 선 고	2017. 1.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25,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7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2009. 8. 10.에 발생하였고,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2009. 8. 10.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4. 21.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7

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권리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에 근거한 것인데, 원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관여한 바 없고 경매절차에서 위 근저당권이 위와 같은 사유로 무효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자신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당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시점에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에까지 형식적으로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시점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7

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당한 2013년 8월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그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4. 21.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5)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유숙

판사 장윤선

판사 장한홍